# 해외주재원 관리세칙

제 정 2010. 7. 1 개 정(1) 2010. 11. 19 개 정(2) 2011. 1. 13 2013. 7. 1 개 정(3) 2014. 1. 3 정(4) 개 개 정(5) 2014. 3. 3 개 정(6) 2014. 4. 1 개 정(7) 2014. 5. 12 개 정(8) 2014. 6. 24 정(9) 개 2014. 7. 18 개 정(10) 2015. 4. 16 개 정(11) 2017. 3. 17 개 정(12) 2017. 7. 7 개 정(13) 2018. 12. 25 개 정(14) 2020. 1. 16 정(15) 2020. 9. 16 개 정(16) 2020. 11. 20 개 정(17) 개 2021. 4. 14 정(18) 2022. 12. 22 개 개 정(19) 2024. 1. 18 개 정(20) 2024. 12. 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해외지사와 공사의 필요 또는 요구에 의해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사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 공사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하여 적용 된다.
- 제3조(우선적용) 해외주재원에 관한 인사사항에 대하여는 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 적용하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해외주재원"이라 함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외지사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2. "국내급여"라 함은 보수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기준급중 국내에 남아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등 개인 사유로 인하여 기준급의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3. "현지수당"이라 함은 기준급 이외에 주재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주재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4. "동반가족"이라 함은 공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주재원의 가족으로 배우자 및 미혼자녀를 말한다.

#### 제2장 인사

- 제5조(주재원 선발) 해외주재원은 공사의 사업계획상의 필요성과 현지의 요청에 의해 선발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 1. 업무 관련 경력이 충분한 자
  - 2. 영어 또는 현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 3. 국제적 감각이 있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
  - 4. 신체가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
- 제6조(서약) 해외주재원으로 선발된 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주재원 서약서(별지서 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국 및 입국에 있어서 인사담당부문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재기간) 해외주재원의 주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또는 지사, 현지사정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주재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제8조(조기귀임) ①해외주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재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귀임조치 할 수 있으며, 2, 3, 4, 6호의 경우 제30조, 제 31조를 포함한 기타 귀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 2. 주재국의 법령에 저촉되어 입국불허, 추방, 체포, 구금의 위기에 처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때
  - 3. 자기사업 또는 공사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때
  - 4. 공사의 재산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5. 현지실정에 적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6. 기타 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 7. 본사 또는 지사의 사정으로 조기귀임이 필요할 때
  - ②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 귀임하는 경우 당초 주재기간 범위내에서 본 국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 본사의 업무 필요에 의해 귀임을 요구할 때
  - 2. 고용계약서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때
  -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삭제)

### 제3장 복무

제10조(근무시간) 해외주재원의 근무시간은 현지의 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휴일) 주휴일과 현지 법정 공휴일은 휴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급여

- 제12조(기준급) 해외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 국내급여는 본인이 사전에 국내 지급을 요청한 일정금액으로서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원화로 지급한다.
  - 2. 해외급여는 본인의 기준급 중 국내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미국달러 또는 주재국 통화로 지급한다.
- 제13조(현지수당) ①현지수당은 주재국의 물가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와 같이 지급한다. 현지수당은 매 5년마다 주재국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현지수당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개시전 또는 종료 후에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관련 법령의 보수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직책수 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자녀수당은 지급하다.
  - ③공사는 해외주재원이 주재국에 부임 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6개월분 범위내에서 현지수당을 선급할 수 있다.
- 제14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해외주재원으로 임명된 자가 월 중에 부임 또는 귀임 시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당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주재국 현지의 법이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16조(업무상 상병 휴직중의 급여) 해외주재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요양중인 주재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2.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요양중인 주재원에 대하여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간은 주재원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며, 그 후에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3. 업무 이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업무인계중의 급여) 퇴직 또는 해고된 자가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별히 명을 받아 근무할 때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또는 해고 당시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조정수당) 해외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되, 국내외 소 득세(부가세 및 기타 제세를 포함한다)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는 금액에 차액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 세금 부담분을 차감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매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적용환율) 해외주재원의 급여는 매월 첫영업일의 전신환 매도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20조(업적급 및 연차수당) 업적급, 초과수익인센티브 및 연차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21조(퇴직금) ①해외주재원이 퇴직할 때에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계산방식은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복리후생

#### 제22조 (삭제)

- 제23조(주택임차) ①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사장이 전결한다.
  - ②현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사 명의로 체결이 어려운 경우 인사담당부문 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 본인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은 공사에서 지원하고 해당 직원이 퇴거 시 환수하여 공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주택임차기준한도는 별표 제2호와 같으며, 단신 부임 시에는 동 한도의 90% 이내로 적용한다. 월 임차료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해당 직원이 부담 한다. 동 한도는 매 5년마다 주재국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택임차기준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증액 비율은 합산하여 10%를 넘을 수 없다.
- 1. 동일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적용
- 2. 3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⑤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소개비와 이사비용은 최초 시 및 주재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현지 실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원은 제4항의 한도 증액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 ⑥수도광열비, 전화사용료, 관리비 등 주택유지비와 주택 이용에 따라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임차보증금 감액분 포함)은 직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임기만료전 인사발령 등 직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계약 종료 전 주택 퇴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임차료는 2개월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역특성상 부득이 동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료의 6개월분 범위 내에서 인사담당부문장의 승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⑧주재원이 현지에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체재하는 경우, 또는 귀임일 이전에 주택 임차가 만료되는 경우 월 주택임차기준한도의 150% 및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건강진단) ①해외주재원은 부임을 위한 출국 전 및 귀임 후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주재기간 중에는 년 1회를 기준으로 본국 출장 또는 방문 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국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주재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제25조(사회보장보험 및 의료비) ①해외주재원과 동반가족의 의료보험은 주재국의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수반되는 의료보험료 중 90%는 공사 가 부담한다. 다만, 건강진단, 치료성격이 아닌 치과보험, 안과부문의 기본적 질 병 치료외 의치나 안경, 기타 예방 및 보상적 성격의 보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 ②현지 법령에 의해 강제된 사회보장보험, 재해보상, 상해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과 같은 제 보험은 전액 지원한다.
  - ③의료보험 미가입 시에 한하여 의료비의 90%를 지원한다.
- 제26조(요양보상) 해외주재원 및 동반가족이 현지의 기후, 풍토에 의한 발병 또는

주재원이 업무상 질병이 걸릴 때에는 공사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액 부담하다.

제27조(휴가 지원 등) ①해외주재원의 휴가는 국내 근무 직원에 적용하는 휴가세 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재국의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를 공사가 부담하고, 휴가 사용을 위해 본 국에 왕복하는 소요일수를 별도로 제공한다.

휴가사유	왕복항공료 지급 대상자
주재원 본인결혼	주재원
주재원 본인사망	배우자 및 동반가족
주재원 부모 및 주재원 배우자 부모 사망	주재원 및 동반가족
주재원 배우자 사망	주재원 및 동반가족
주재원 자녀 사망	주재원 및 동반가족
주재원 자녀 결혼	주재원 및 동반가족
기타 사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 결정

③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에게는 부임 전후와 귀임 전후에 각 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자녀학자금) ①해외주재원의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주재원의 자녀(국내 취학자녀 포함)로 한다. 단, 지원대상 학자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보증금 등 매기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다음 각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1. 현물로 반대급부를 받게 될 비용(교과서대, 피복비, 앨범비, 학보대 등)
- 2. 저축금, 보험료, 의연금, 기부금, 실습비, 보충수업비, 통학차량이용료
- 3. 각종 행사준비금(졸업관련비용, 수학여행경비, 체육비 등)
- 4. 기타 자녀 교육비의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는 제비용
- ②자녀교육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2년에 한하여 지원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 이내로 지원한다.
- 2. 초·중·고교생의 경우 등록금의 실제 납입액으로서 초·중교생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교생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로 지원하되, 금액 한도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싱가포르, 인도의 경우 실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는 국내학자금 보조 기준을 준용한다. 단, 주재국의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진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제29조 (삭제)

- 제30조(부임여비) 해외주재원으로 부임 또는 귀·전임하는 직원에게는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부임여비는 여비세칙의 국외여비에 준하여 지급하되 소요일수는 별표 제3호에 따른다.
- 제30조의2(가족여비) ①해외주재원으로 부임 또는 귀·전임하는 직원의 동반가족에게 1인마다 왕복 1회에 한하여 직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 식비 및 일비 상당액을 여비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 ②해외주재원의 본국 귀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반가족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지원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31조(가재이전비) ①해외주재원 및 동반가족이 부임 또는 귀·전임 시 필요한 가재의 이전에 소요되는 선임, 포장비, 내륙운송비, 미화 30,000 달러 이내의 부보액 보험료, 통관 제비용은 제2항의 한도 내에서 공사가 관련 증빙서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하거나 기본이전비(미화 8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관세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②제1항의 가재이전은 선박운송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한도는 부임 및 귀임시에 각 20 CBM 이다.
- 제31조의2(기타 제비용) 해외주재원으로 부임하는 직원과 동반가족에 대하여 여권 및 입국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입국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의3(특수한 경우의 여비지급) 해외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이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숙소에 일시 거주하거나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하는 경우 인사담당부문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세칙에 따른 여객운임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채용직원의 보수 등) 현지 직원의 채용, 보수, 복지 및 퇴직금은 현지 의 법규, 관례 및 실정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근무직원의 급여 등) 공사의 필요 또는 요구에 의해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사, 복무,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적용 받을 경우에는 공사 해외지사 근무직원의 수준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5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국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삭제는 시행일 이후 파견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2항의 초등학교 지원 기준 조정(안)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 현지수당

구분	2급 이상	3급 이하
뉴욕 (미국 달러 기준)	3,400	3,000
샌프란시스코 (미국 달러 기준)	3,400	3,000
런던 (영국 파운드 기준)	2,700	2,400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기준)	4,900	4,200
뭄바이 (미국 달러 기준)	4,300	3,600

〈별표 제2호〉

## 주택임차기준한도

구분	2급 이상	3급 이하
뉴욕 (미국 달러 기준)	4,500	4,200
샌프란시스코 (미국 달러 기준)	4,500	4,200
런던 (영국 파운드 기준)	3,200	2,970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기준)	8,000	7,000
뭄바이 (미국 달러 기준)	4,700	4,300

※ 3급 이하 직책자는 2급 기준 준용

〈별표 제3호〉

# 국외부임 소요 여행일수

지역	일본·중국·동남아시아	그 외 지역
일수	1일	2일

※ 입·출국 시 동일하게 적용함

### 해외주재원 서약서

본인은 금번 해외주재원으로 명을 받고 근무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기본책무) 항상 공사의 설립취지와 제 규정 및 경영계획 등을 숙지하여 공사가 그 사명을 달성하도록 맡은 바 소임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2.(품위유지) 현지에서 공사를 대표함을 자각하고, 항시 사명감과 자궁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직무 상 또는 직무 외의 처신을 함에 있어 국제 금융인으로서의 품위와 공사 직원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3.(업무자세) 현지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맡은 바 직무에서 최선의 업무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공사의 명예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 4.(체류상황보고) 본국 귀국 및 주재국으로의 출국 등 본인 및 동반가족의 체류상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 5.(자원이용) 공사에 귀속되는 물적 자원, 시간 등 제 자원을 업무외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집무시간 중 업무목적 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 6.(정보보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금융인으로서의 양식으로 대처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각종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습니다.
- 7.(본사와의 협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모든 중요사항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특히 해외근 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정보교류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겠습니다.
- 8.(국익확보) 현지의 한국계 유관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익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9.(현지화 및 세계화) 현지 직원과의 화합에 노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식 사고방식과 세계적 기준 (global standard)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하